

## <부록 4>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(현행)

###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

[시행 2013.3.23] [대통령령 제24423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영은 과학교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) ①과학교육진흥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개정 2006.6.12, 2008.2.29, 2013.3.23>

1. 기획재정부·미래창조과학부·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공무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

2. 그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·경험이 있는 자

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.

제4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1.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

2.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3. 과학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- 4.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
- 5. 그밖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심의회회의 회의) ①위원장은 심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①심의회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위원의 수당등) 심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9조(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)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부칙 <제24423호, 2013.3.23> (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차관"을 "교육부차관"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, 제4조제5호, 제5조제2항,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

로 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 중 "교육과학기술부"를 "미래창조과학부·교육부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"를 "교육부"로 한다.

⑦부터 <105>까지 생략